

##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

경기도교육청  
2012.02.27 제정  
2012.06.01 1차 개정  
2016.02.19. 2차 개정  
2016.06.13. 3차 개정  
2018.10.04. 4차 개정  
2020.02.21. 5차 개정  
2023.04.24. 6차 개정  
2024.01.26. 7차 개정

### 1. 목적

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혼가함에 있어 경기도의 교원수급, 교육과정 운영, 소요예산, 휴직목적의 적합성,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기 위한 기준이다

### 2. 관련 법령

- 1)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(휴직) 및 제45조(휴직기간 등)
- 2)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9조의2(육아휴직), 제19조의3(고용휴직), 제19조의4(가족돌봄휴직)
- 3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3조(휴직·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)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3조(「국가공무원법」과의 관계)
- 4) 「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봉급 및 수당지급)
- 5) 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(경력기간계산)
- 6) 「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」 제24조(휴직의 결정)

### 3. 청원휴직(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)

- 1) 유학휴직(5호):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:  
3년 이내(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)
- 2) 고용휴직(6호): 국제기구, 외국기관, 국내외의 대학·연구기관, 다른 국가기관, 재외교육기관(「재외 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)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: 고용기간(단, 비영리법인은 3년 이내)
- 3) 육아휴직(7호)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: 3년
  - 7의2호: 만 19세 미만의 아동(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대상 아동 제외)을 입양할 때: 6개월 이내
  - 7의3호: 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: 1년 이내(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)
- 4) 연수휴직(8호):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하게 된 때: 3년 이내
- 5) 가족돌봄휴직(9호): 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 포함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: 1년 이내(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)